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최기찬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
학교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과 지역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따라서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할 뿐 아니라, 학교 내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시 대책마련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.

본 조례안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,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.

감염병 발생시에는 국가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을 명시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, 교육청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등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